

[가격표시제 실시요령] 개정고시

- 지식경제부 고시 2009- 137호, 2009. 7. 8 -

지식경제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구매를 돋고 유통업체간 가격 경쟁을 유발하기 위하여 단위가격의 표시의무 품목 및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는 「가격표시제 실시요령」을 개정·고시하였습니다.

- 이번 고시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는 기 제작 포장지 소진 및 신규 포장지 도안 변경에 일정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관련 업계의 건의를 감안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확대

(1) 단위가격 표시의무 확대로 소비자에게

정확한 비교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제조업체의 용량 변경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며, 사업자간 가격 경쟁을 유도함.

유형	현 행	개선안
가공식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20종) 햄류, 우유, 설탕, 커피, 치즈, 식용유, 참기름, 마요네즈, 간장, 맛살, 식초, 복합조미료, 소금, 참치캔, 라면, 분유, 유산균발효유, 고추장, 된장, 쥬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41종추가) 소스류, 케찹, 청국장, 밀가루, 어묵, 국수, 두부, 맛김, 과자, 껌, 캔디류, 빙과류, 아이스크림류, 초콜릿류, 초코파이(상자), 잼, 베이컨, 소세지, 냉동식품(만두), 젓갈류, 액젓, 차류, 과실음료, 청량음료, 코코아, 인스턴트분말크림, 마카로니, 스파게티, 버터, 마가린, 벌꿀, 빵가루, 빵, 시리얼, 식용기름, 와인류, 생선통조림, 생수, 주류, 드레싱류, 건어물
신선식품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3종신설) 농산물, 수산물, 축산물

나.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 확대

(1)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확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 촉진 및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제조업체가 유통과정

정확한 비교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제조업체의 용량 변경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며, 사업자간 가격 경쟁을 유도함.

유형	현 행	개선안
가공식품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4종신설) 라면, 과자, 빙과류, 아이스크림류

*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(www.mke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